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69 (18 - 22 April 2016)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Subject: Newsflash of MEPC 69

제 6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MEPC 69차”라 한다)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6년 4월 18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MEPC 69차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1차 소식지 News Flash로 주요 의제에 대한 요약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2차 소식지 News Final에서는 결정사항을 포함한 주요의제 회의결과 및 상세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MEPC 69차에서 결정된 각종 MARPOL 협약의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각종 결의서로 채택된 지침서는 즉시 효력을 지니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미발효상태, 현재 51개국 및 34.87% 선복량 비준)

- 현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2016년 6월 15일자로 51개국 및 34.87%의 선복량(35% 요구)이 비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EPC 69차의 본회의장 논의에서 핀란드 및 페루가 자국의 BWM 최종 비준에 대한 내부 절차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음을 밝혔으며, 페루가 지난 6월 10일에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현재 동 협약의 마지막 비준국가가 되었습니다. 2015 IHS 선복량 통계자료에 따라, 핀란드는 0.14%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핀란드의 비준으로 35%의 선복량 조건이 만족될 수도 있습니다.

1.1 평형수 처리장치 IMO 최종승인 3건 확정

- 최종승인: ECS-HYCHLOR™ System(Korea), NK-CI BlueBallast System(Korea), ATPS-BLUE_{sy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Japan)

1.2 MEPC 69차까지 보고된 정부형식승인 완료된 평형수 처리장치 65건

- 신규형식승인(8건): AHEAD®-BWMS(China), NiBallast™ BWMS(China), Seascape® BWMS(China), YP-MWBS(China), SeaCURE BWMS(Germany), Van Oord BWMS (Netherlands), EcoGuardian™ BWMS(Republic of Korea), BlueZone™ BWMS(Republic of Korea)

1.3 G8 지침서의 개정관련 논의

- 기술 code의 형태와 같이 G8 지침서가 강제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지난 MEPC 68차에서는 향후 개정될 G8 지침서가 NOx Technical Code 2008과 유사한 법적상태를 지니는 강제적인 Code로 개발되어야 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으나, MEPC 69차는 G8 지침서의 개정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의 최종결정을 연기하였음
- BWMS의 자가 모니터링(Self-Monitoring system) 장비에 관한 논의: MEPC 69차는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BWMS의 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BWMS의 적절한 운전 및 고장에 대한 지표 파라미터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자가 모니터링 관련 기술력의 개발현황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고려하여, 향후 MEPC 70차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추가논의하기로 합의함

- 생존 생물(viable organism)에 대한 정의 및 생물의 번식능력(reproduction ability)을 측정하는 MPN(Most Probable Number) 분석기법에 대한 논의: 평형수 내에 포함된 생물의 살아있음(생존력)에 대하여 MEPC 69차에서는 제안된 정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생물의 생존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관련 Circular에 추가하기로 합의함. 합의된 방법론에 대하여 BWM.2/Circ.42/Rev.1(Guidance on ballast water sampling and analysis for tri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BWM Convention and Guidelines (G2))로의 반영여부는 차기 PPR 4차에서 추가검토 예정임. 사실상, MEPC 69차 전의 통신작업반 논의에서는 생존 생물의 정의에 생물의 번식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MPN 방법을 포함)을 찾는 것으로 하였으나, USCG가 최근 MPN 방식에 따라서 검증된 UV type BWMS의 형식승인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개정될 G8 지침서에 MPN 방식의 추가여부는 향후 위원회의 논의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G8 지침서의 개정 및 기타 주요사항들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의 논의를 위하여, MEPC 69차는 MEPC 70차 1주전(2016.10.17~21) 회기간 작업반(Intersessional Working Group)을 개설하는데 합의함

1.4 BWM 협약의 B-3 규칙 개정안: 평형수 성능기준 이행시기 관련

- IMO 사무국으로부터의 법적조언에 대한 고려: BWM 협약의 체약국에게 MARPOL 협약의 준수 또한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BWM 협약은 MARPOL Annex I의 IOPP 증서에 대한 정기검사 관련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MEPC 69차는 BMW 협약의 B-3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함. 개정된 B-3 규칙은 정기검사(renewal survey)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고, 협약에 언급하는 정기검사는 MARPOL Annex I에 따른 IOPP 증서에 대한 정기검사임을 언급하는 별도의 결의서 초안을 개발하였음

- BWMS 설치기한 사항이 IOPP 정기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MARPOL Annex I의 IOPP 증서에 관계없는 선박들에게 개정된 B-3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로 고려하기로 함

- 현존선박 BWMS 설치시기 연장에 대한 제안: 모든 현존선박 BWMS의 소급설치를 위한 Dry-dock 시설의 부족한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 평형수 99% 용적 교환(D-1)의 확대시행이 D-2의 성능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현존선의 BWMS 설치시기를 조정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가 있었음. 하지만, MEPC 69차는 Dry-dock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제시된 자료의 객관성 부족 및 평형수 교환요건 확대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 결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여 등의 이유로 동 제안사항을 동의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MEPC 69차는 협약의 이행시기 재조정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는 당사국에게 차기 MEPC 70차의 추가검토를 위한 문서제출을 요청하였음

1.5 현행의 G8 지침서(Res.MEPC.174(58))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BWMS의 개발자 및 장비를 탑재한 선주를 위한 비처벌 조항관련 Road Map

- 현행의 G8 지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득한 예전장비는 향후 개정될 G8 지침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와 일치되어야 함을 제안한 문서를 고려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G8 지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BWMS를 장착한 선주들에 대한 비처벌 조항의 근본취지에 위배됨을 고려하여 동 제안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 이러한 선주들은 선박 또는 장비의 일생동안 선주 및 선원의 능력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효성 결여에 따른 장비의 오작동 때문에 장비의 교체가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근본 취지는 유지하기로 합의함

1.6 선주 및 조선소 고려사항

- 현재 51개국 및 34.87%의 선복량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35%의 선복량 비준조건의 만족이 매우 근접하였습니다. IMO 및 관련산업계는 2016년 중으로 협약의 비준이 완료되어 2017년 중에 협약의 발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이행시기를 언급하는 B-3 규칙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총회결의서 Res.A.1088(28)에 근거하여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협약의 발효일 전에 건조되는 모든 선박들은 현존선으로 간주되므로 선박의 건조 중 평형수 처리장치의 강제탑재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재 건조가 진행중인 선박의 선주 및 조선소 관계자께서는 동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선박의 BWMS 적용에 관한 향후의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G8 지침서의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현행 G8 지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탑재한 선주들을 위한 비처벌(Non-penalizing) 조항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항들은 USCG BWM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 즉, 미국항에서 입항하여 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USCG의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의 시장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향후의 신조 및 현존선의 소급적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USCG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에 대한 정보는 향후의 기술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할 예정이며, USCG BWM 규정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은 과거의 기술정보(2015-IMO-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B-3 규칙에 따른 BWM 협약의 이행시기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69 (18 - 22 April 2016)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규칙 B-3	용골거치	평형수 합계 용량 m ³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09년 전 건조(K/L) 선박									
1.2 항	2009년 전	1,500미만	D-1 or D-2			발효 (예상)	D-2 (협약의 발효일자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1.1 항	2009년 전	1,500이상 5,000이하							
1.2 항	2009년 전	5,000초과							
2009년 이후 건조(K/L) 선박									
3 항	2009년 이후에서 협약의 발효일 전	5,000미만	D-1 or D-2			발효 (예상)	D-2 (협약의 발효일자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4 항	2009년 이후에서 2012년 전	5,000이상							
5 항	2012년 이후에서 협약의 발효일 전								
협약의 발효 이후 건조(K/L) 선박									
	발효일자 이후	모든 용량	N/A				D-2		

2. 대기오염 및 선박에너지 효율규정

2.1 MARPOL Annex VI, 21.6규칙에 따른 EEDI Review

- MARPOL Annex VI의 21.6규칙에 따라, EEDI 감축률 1단계 시작시점 및 감축률 2단계 중간시점에 기구는 선박에너지효율 설계지수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동향을 검토해야 함.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규칙에 규정된 관련 선종별 시기,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기준선 파라미터 및 감축률을 개정해야 함.
- Phase 2에 대한 선종별 시기, EEDI 기준선 파라미터 및 감축률을 변동없이 유지해야 함을 권고하는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토하였으며, 대다수의 선박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감축률 2단계를 만족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MEPC 69차는 Ro-Ro 화물선, Ro-Ro 여객선 및 대빙등급 선박의 보정계수 등에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함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는 MEPC 70차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2.2 2014 EEDI 계산지침의 개정

- 이종연료 기관이 탑재된 선박의 attained EEDI 계산공식 개정제안을 검토하였고 기본적으로 동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계산공식 및 제시된 예시의 오류 등에 대한 추가의 명확화, 개정 및 수정이 필요함을 식별하였음. 따라서, 향후 MEPC 70차에서 추가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2.3 2014 EEDI 검증지침의 개정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 MEPC 69차는 해수의 온도측정 위치 및 수조시험 보고서에 3가지의 변동하중 계수를 포함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해수온도 측정위치는 이미 ISO 15016:2015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변동하중 계수에 대한 절차가 현재 ITTC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제안사항에 대한 추가논의를 하지 않음에 동의하였음

2.4 단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MARPOL Annex VI의 4장 요건면제에 관한 논의

- MEPC 68차에서 선박의 매선, 수리, 입거 및 재활용 등을 위하여 1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에 대한 SEEMP의 비치면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MEPC 69차에서는 동 면제사항에 추가하여 EEDI 요건 또한 면제하자는 추가 제안을 고려하였음. 동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 MEPC 69차는 차기 MEPC 70차에서 면제증서 양식을 포함한 MARPOL Annex VI를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동 면제의 임시적용을 언급하는 MEPC 회람문서를 승인하였음

2.5 최소추진출력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 관련

- MEPC 69차는 개정된 최소추진출력의 개발에 관한 SHOPERA 및 JASNAOE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경과를 주목하였으며, 동 연구의 최종결과 및 지침서의 개정제이 MEPC 71차로 제출될 것임을 주목하였음

2.6 연료유 품질

- MEPC 69차는 해상용 연료유 공급자의 품질향상에 대한 지침 초안을 고려하였으며, 현행의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협약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통신작업반의 작업 진행 경과 및 연료유 공급자, 구매자 및 정부를 위한 지침의 개발현황을 고려하였으나, 연료유 품질 측면의 현행의 MARPOL Annex VI의 법적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MEPC 69차는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통신작업반의 재구성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MEPC 71차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연료유 품질에 관련된 법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함

2.7 0.5% 황 함유량의 이용가능성

- MEPC 69차는 연료유 이용가능성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경과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 산업계가 시기적절하게 동 요건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0.5% 황 함유량 요건의 이행날짜를 MEPC 70차에 결정하기로 합의함

2.8 육상전원의 강제사용에 관한 논의

- MEPC 69차는 유럽 및 캘리포니아의 특정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육상전원의 강제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IMO가 항구 및 신조선박들에게 육상전원사용을 위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한 국제표준연결구의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하지만, 육상전원사용이 강제화되어서는 안되며,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MARPOL Annex VI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 항만들의 육상전원 사용에 관한 최근동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당사국에게 차기 MEPC에 추가 제안을 하거나, 선박의 장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사안전위원회로 새로운 제안을 하여줄 것을 요청함

2.9 다수의 기관작동개요 사용에 관한 지침서 개발 관련

- MEPC 69차는 최근의 제작되고 있는 전자제어방식의 기관이 다양한 부하에서 각기 다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수의 기관작동개요의 사용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필요성을 언급하는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음. 이러한 기관의 운전에 따른 다양한 설정은 연료소모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임

- 일부 당사국들은 특정 "Map"에서 기관이 운전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였으나, 관련 산업계는 NOx Tier III 기준의 만족을 위한 이종연료기관 또는 SCR의 운전 등과 같이 기관들이 하나 이상의 기관작동개요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MEPC 69차는 PPR 4차 전문위원회의 추가검토를 위하여 동 사항들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음

2.10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관한 지침서 관련

- MEPC 69차는 Res.MEPC.259(68)로 채택된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제안과 함께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관한 지침서 및 MARPOL Annex VI의 항만국통제를 위한 지침서에 임시적인 미준수 또는 우발적인 고장과 같은 운항적인 사항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사항을 고려하였음

- 동 사항은 EGCS 지침서가 추가로 개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EPC 69차는 EGCS 지침서 및 MARPOL Annex VI의 항만국통제를 위한 지침서의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함에 동의하였음

3. 선박의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및 운항적 추가조치 (Data Collec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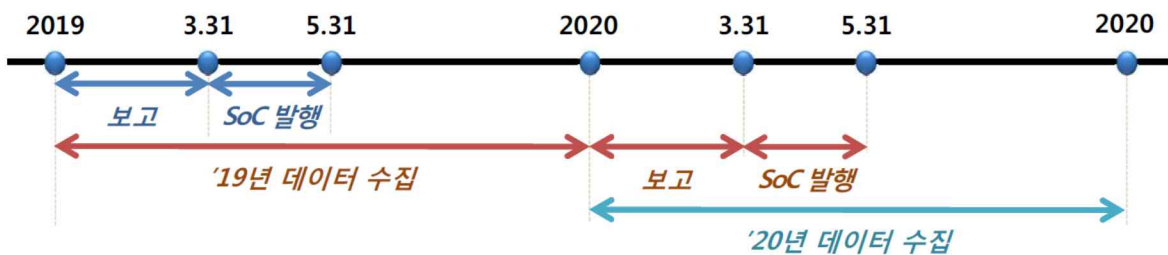
3.1 규정의 일반

- MEPC 69차는 GT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연료소모량에 관계되는 자료의 수집을 요구하는 강제요건인 MARPOL Annex VI의 개정초안을 승인하였음. 선사는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선박의 주관청으로 보고해야 함. 주관청은 이 정보를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보고해야 함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 3.2 수집되어야 할 정보
 - 선박식별번호, IMO 번호, 선박의 기술상세, 선종, GT, NT, DWT, 주기 및 보조기관의 출력(kW), EEDI(해당되는 경우), Ice Class(해당되는 경우), 연료소모량, 운항거리 등
- 3.3 적합확인서의 발행
 - 관련 규정은 선박이 요구되는 자료를 주관청에게 보고하고 이 자료가 검증되었을 때, 선박들에게 적합확인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항만국통제의 역할은 본선에 유효한 적합확인서가 있는지 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됨
- 3.4 향후 작업계획
 - 요구되는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지침을 SEEMP guidelines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 정부의 데이터 검증절차에 관한 지침서
 - 전자보고 및 표준보고 양식의 개발
- 3.5 Data Collection System의 이행시기 관련



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개정 및 채택 - 2017년 9월 1일 발효예정

- 4.1 MARPOL Annex II의 부록에 언급된 GESAMP 위험성 평가절차의 개정안 채택 (Res.MEPC.270(69))
- 4.2 발틱해 특별해역 요건의 발효일자 및 국제오수오염방지협약 증서양식의 개정안 채택 (Res.MEPC.274(69), Res.MEPC.275(69))
 - 분뇨 속에 포함된 질소 및 인의 제거기준이 포함된, Res.MEPC.227(64)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오수처리장치는 발틱해역에서 운항하는 2019년 6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여객선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또는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모든 현존여객선에게 적용됨

- 이와 관련하여, 발틱해 특별해역 안에 위치한 러시아 관할권(특별해역 내의 동경 28도 10분 내에 위치한 항구) 내의 항구로 바로 진입하고, 특별해역 안의 어떠한 항구에도 입항하지 않고 특별해역을 떠나는 여객선들은 2023년 6월 1일 이후로 적용됨

4.3 가스연료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검증을 위한 NOx Technical Code 2008 개정안 채택 (Res.MEPC.272(69))

- 동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 이후로 NOx Code가 적용되는 선박에게 탑재되거나 설계되는 기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이중연료기관 또는 가스기관에게 적용되는 사항

4.4 배출통제해역의 NOx Tier III 요건의 운항준수에 대한 기록요건을 언급하는 MARPOL Annex VI의 개정안 채택 (Res.MEPC.271(69))

- 배출통제해역의 진입 및 전출 시 선박용 디젤기관의 Tier 및 운전상태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관청이 인정하는 로그북에 기재되어야 함을 언급

5. 항만수용시설의 부적절성 (MEPC.1/Circ.810 관련)

5.1 MEPC.1/Circ.810(adequate port reception facilities for cargoes declared as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under MARPOL Annex V)의 연장적용 불허

- MEPC 69차는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 화물잔류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수용시설의 세계적인 부족함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MEPC.1/Circ.810에 언급된 잠정지침을 2019년 1월까지 연장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MEPC 69/11/2 문서를 고려하였음

- 현재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수용시설들이 항구 및 터미널 내에 존재하고 있고, 잠정지침의 연장적용은 항만당국에게 요구되는 수용시설의 추가확충을 장려할 수 없을뿐더러 수용시설 확충에 대한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당사국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MEPC.1/Circ.810의 연장적용을 승인하지 않았음

-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화물잔류물 및 화물창 세정수의 해상배출은 항만수용시설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선장 및 선박 운항자는 MEPC.1/Circ.834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항만수용시설의 부적절성을 보고할 것이 적극 장려됨

6. IACS 통일해석

6.1 Res.MEPC.227(64) (2012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of effluent standards and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performance tests for sewage treatment plant)의 적용상, "2016.1.1 이후에 설치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신선에 대하여, 2016.1.1 이후 건조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장치
- 신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오수처리장치의 납품계약일이 2016.1.1 이후이거나, 납품계약일이 없는 경우 실제 장비 납품일이 2016.1.1 이후인 경우

6.2 Res.MEPC.107(49)의 적용상, "15ppm 발지 알람장비의 정확성은 IOPP 정기검사 시에 확인되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검정증서의 유효성은 IOPP 연차/중간/정기검사 시 확인되어야 한다
- 15ppm 발지 알람의 정확성은 5년 이내 혹은 제조자가 정한 주기, 둘 중 짧은 기간을 주기로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부터 보정되거나 시험되어야 함

7. MARPOL Annex V에 따른 폐기물 기록부 양식의 개정

7.1 MEPC 65차(2013.5)는 MEPC 66차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폐기물 기록부의 양식개정안을 언급하는 MARPOL Annex V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하지만, 협약의 관련문구 및 폐기물 기록부의 양식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항목들의 불일치에 근거하여 동 개정안의 채택을 MEPC 67차로 연기하였음

7.2 MEPC 67차는 폐기물 기록부 양식의 추가개정안을 제안하는 문서들을 고려하였으며,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추가의 논의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MEPC 68차로 폐기물 기록부의 양식개정에 관련된 추가의 의제를 신설하였음. 하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MEPC 68차는 제출된 문서들에 대한 논의를 MEPC 69차로 연기하였음

7.3 MEPC 69차는 당회 회기 및 이전회의로 제출된 문서들을 고려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MARPOL Annex V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배출되거나 소각된 양의 추정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해상 또는 육상수용시설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명확화
- 폐기물 기록부를 2개의 파트로 구분(화물잔류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파트 및 화물잔류물의 배출에 관한 파트)
- MARPOL Annex V의 7규칙에 따른 폐기물의 예외적인 배출 또는 손실을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폐기물 기록부의 추가항목 신설
- 상기 개정안들을 고려한 MARPOL Annex V의 10.3 규칙의 재배열 및 개정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 7.4 이에 추가하여, MEPC 69차는 선상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폐기물의 범주를 추가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동 폐기물의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추가의 제안 문서 제출을 차기 MEPC 70차로 요청하였음. 폐기물 기록부의 양식개정안은 차기 MEPC 70차에서 채택되고, 2018년 3월 1일 이후로 발효될 예정임

8. MARPOL 협약의 전자기록부 사용

- 8.1 MEPC 66차는 MARPOL 협약의 전자기록부 사용에 관한 통신작업반을 다시 개설하였으며, 현재 개발중인 지침초안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음. 전자기록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은 MARPOL 협약의 개정안 및/또는 통일해석 및 항만국통제 절차서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2011 (Res.A.1052(27)))의 개정필요성 또한 고려하도록 지시 받았음
- 8.2 하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MEPC 68차는 동 건에 대한 고려를 연기하였으며, MEPC 69차는 통신작업반 및 회기 중에 제시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MARPOL 협약의 전자기록부에 대한 적용, 특히 MARPOL Annex V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기록부의 양식에 대한 일치여부와 관련하여 PRR 4차의 추가검토를 지시하였음
- 8.3 MEPC 69차는 전자기록부의 사용에 대한 적용이 NOx Technical Code, 2008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engine parameter 기록부 또한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으며, PRR 4차로 추가검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또한, 있도록 PRR 4차로 항만국통제 지침서 및 MARPOL 협약의 관련 개정안을 추가로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9. 비자항 무인바지선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 면제

- 9.1 MEPC 68차는 III 2차 전문위원회에게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관한 MARPOL Annex I, IV 및 VI의 개정안 및 관련 지침서(*exemption of unmanned non-self-propelled barges (UNSP) barges from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the MARPOL Convention*)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음
- 9.2 비자항 무인바지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 항해 중 선원 또는 여객이 없는 선박;
- MARPOL Annex I의 1.1규칙에 정의된 기름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선박;
- MARPOL Annex II의 1.10규칙에 정의된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선박;
- MARPOL Annex IV의 1.3규칙에 정의된 오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선박;
- 상기 조건들이 만족되고 있는지에 관한 검사가 수행된 선박

9.3 MEPC 69차는 다음과 같은 제안문서들을 추가로 고려하였음:

- MARPOL Annex I, IV 및 VI 개정초안과 관련 지침서에 대한 전체적인 framework의 수정 및 관련지침서는 결의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
- MARPOL Annex I, IV 및 VI의 개정에 관한, 해당선박으로 주어지는 면제증서는 단일의 면제증서가 아닌 개별 부속서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제증서가 발행되어야 함을 제안

9.4 상기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여, MEPC 69차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 어떠한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면제증서는 MARPOL 협약의 개별 부속서별로 발행되어야 함;
- MARPOL Annex IV 또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포함되어야 함;
- 기름기록부에 관한 MARPOL Annex I의 17.1 규칙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9.5 비자항 무인바지선에 대한 MARPOL 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관한 관련 지침서 및 MARPOL Annex I, IV 및 VI의 개정안은 III 3차 전문위원회의 완료 후에 MEPC 70차에서 승인될 수 있음

10.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고체산적화물의 신고 및 분류에 관한 요건

10.1 MEPC 68차는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고체산적화물의 분류기준 및 동 화물의 해양환경으로의 유해성 유무에 대한 화주의 신고 요건을 MARPOL 협약으로 강제화시키기로 동의하였음. MEPC 69차는 해양환경으로 유해한 산적고체화물의 분류에 대한 기준 및 화주의 신고 요건만을 MARPOL Annex V하에 강제화시키기로 합의함.

10.2 이에 추가하여, MEPC 69차는 제안된 MARPOL Annex V의 개정안 및 이에 상응하는 관련 각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에 동의함

“Solid Bulk Cargoes as defined in Reg.VI/1-1.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69 (18 - 22 April 2016)

BRIEFING STATUS

-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08-2016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other than grain, shall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I of this Annex, and declared* by the shipper's as to whether or not they were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for ship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refer to section 4.2.3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IMSBC) Code; for ships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other means of declaration may be used, a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 10.3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MEPC 69차는 가장 최신의 MARPOL Annex V 개정안과 관련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CCC 3차로 IMSBC Code 및 2012 MARPOL Annex V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의 개정안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음

11. IOPP 증서추록 Form B의 개정

- 11.1 MEPC 69차는 MARPOL Annex I의 부록으로 제시된 IOPP 증서추록 Form B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분리평형수에 관한 기입항목을 단순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에게 적용되었던 요건들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음. 동 개정안은 MEPC 70차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2018년 3월 1일 이후로 발효될 예정임

- 끝 -

P.I.C:

Kim Hoi-Jun /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0

Fax:+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